#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주요 FAQ

2022. 1.



# 목 치

# ▶ 창업 · 벤처

1. 창업의 정의(사업개시일 기준)	1
2. 주관기관 선택 시 지역제한	2
3. 사업신청시 나이제한	2
4.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발절차	2
5.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대상	2
6. 1인창조기업 확인 여부	3
7. 메이커 스페이스	3
8. 로컬 크리에이터	3
9. 창업기업 확인제도	4
10. 로컬 크리에이터, 초기창업패키지 중복신청 가능 여부	5
II R&D (기술보호, 스마트공장 포함)	
	6
1. 창업기업 업력 판단기준 및 매출액 기준 시점	
1. 창업기업 업력 판단기준 및 매출액 기준 시점 2. 창업성장R&D 디딤돌 창업과제 내 R&D 첫걸음 기업	8
1. 창업기업 업력 판단기준 및 매출액 기준 시점 2. 창업성장R&D 디딤돌 창업과제 내 R&D 첫걸음 기업 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 제한 횟수	8
1. 창업기업 업력 판단기준 및 매출액 기준 시점 2. 창업성장R&D 디딤돌 창업과제 내 R&D 첫걸음 기업	8
1. 창업기업 업력 판단기준 및 매출액 기준 시점 2. 창업성장R&D 디딤돌 창업과제 내 R&D 첫걸음 기업 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 제한 횟수	8 8 8
1. 창업기업 업력 판단기준 및 매출액 기준 시점	8 8 8
1. 창업기업 업력 판단기준 및 매출액 기준 시점	8 8 8 9
1. 창업기업 업력 판단기준 및 매출액 기준 시점	8 8 8 9 9
1. 창업기업 업력 판단기준 및 매출액 기준 시점	8 8 8 9 9

< 기술보호 >	Ⅳ 정책자금·기술보증
10. 기술보호 보안, 법률자문 중복지원 가능여부 10	
11. 기술보호 자문신청시, 전문가 배정과정 10	< 정책자금 >
12. 기술자료 임치제도 10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절차
13. 기술임치제도, 특허제도의 차이 11	2. 비대면 정책자금 상담
14.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i>,</i> 중재의 차이 ···································	3. 정책자금 상담시 필요서류
15.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의 조정·중재 신청 가능여부 ········ 11	4. 은행 통한 대출시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관련
15. 구자 모든 소중 중인 자신의 소성·중재 신성 가중역구 11	5. 중소기업 주업종 판단 기준
	6.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자금
< 스마트공장 >	
16.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지원 대상 12	< 기술보증 >
17. '21년 대비 '22년 주요 개선내용 13	7. 보증상담 방법
18. 기업규모에 따른 신청가능 여부 13	<ol> <li>보증신청시 필요 서류 및 제출방법</li> </ol>
19. 정부지원사업 수혜 기업 신청 가능 여부 13	
20.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이란 13	9. 非벤처기업 및 특허 미보유에 따른 보증지원 여부
21. 정부지원금 비율 14	10. 보증 수수료
	11. 보증서 담보시 은행 대출 금리
	12. 연대보중 관련
<u> </u>	
1.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가능 횟수 15	V 소상공인
2. 수출바우처 사업 기업분담금 지원비율 및 분할납부 15	
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비율 16	< 정책자금 >
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가능 인증 16	1. 소상공인 판단기준
5. 수출유망중소기업 신청자격(간접수출 인정여부) 16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사이트 ····································
6. 『브랜드K』지원제도란? 17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기간

4. 중도상환시 수수료 발생여부	<b>2</b> 9
5. 세금 세납중인 소상공인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b>2</b> 9
6. 정책자금 중복 신청 여부	<b>2</b> 9
7.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 각각 신청 여부	30
8. 공동명의 사업장일 경우 사업주 각각 신청 여부	30
9.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대신청한도 ;	30
10. 폐업시 일시 상환 여부	30
< 지원사업 >	
11. 소상공인 무료법률 지원대상시 중위소득 기준	31
1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과 필요서류	31
13. 2개 이상의 다른업종 영위시 백년가게 업종판단	31
14. 백년소공인 신청시 기업승계로 인정되는 증빙서류	31
1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자격과 부담금	31
16. 제로페이 가맹비	31
17 제로페이 가맷전주가 결제내역 관리하는 방법	31

# 창업 · 벤처

### 1. 창업의 정의?

□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 참고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2조
- (창업)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재창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창업자)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재창업자)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초기창업자)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 창업·재창업·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참조
- 사업개시일 기준은 ?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 주관기관 선택 시 지역 제한이 있나요?

□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특화분야 사업의 경우 본인의 분야에 맞는 주관 기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3. 창업사업 신청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 □ 창업지원사업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이 "청년의 경우 만39세", "중장년의 경우 만40세 이 상"으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 예)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

# 4. 청년창업사관학교 선발절차는?

□ 선발절차는 **각 사관학교별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본교(안산)으로 신청하시면 본교(안산)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하고, 서울로 신청하시면 서울에 신청하신 부들 중에서 선발합니다.

# 5.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

- □ 재도전 성공패키지의 지원대상은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 내인 기업의 대표자로,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한 이력이 있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나이, 지역에 대한 제한 조건은 없으나, 폐업 관련하여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 이력(폐업사실증명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 6. 1인 창조기업 확인 여부?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의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메이커 스페이스란?

- □ 메이커스페이는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일반형)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적 혁신역량을 축적하는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등을 지원합니다.
- (전문형) 고도화 장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공간으로 전문메이커의 고도화된 전문적인 창작활동과 함께 지역 창업지원기관을 연계하 여 우수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특화랩)** 일반랩 중 금속, 목공 등 특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메이커 육성과 제조창업을 지원합니다.
  - 메이커(Maker):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창작·개 발하는 자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작활동을 한느 대중을 지칭합니다.
  -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필 요한 장비 등을 갖춘 공간을 의미합니다.

# 8. 로컬 크리에이터란?

- □ 지역특성(문화, 관광 등) 및 자원(공간, 생산품 등)을 기반으로 ICT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①지역가치 ②로컬푸드 ③지역기반제조 ④지역특화관광 ⑤거점브랜드 ⑥디지털문화체험 ⑦자연친화활동

### 9. 창업기업 확인?

- □ 목 적 :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 위에 속한 자
- □ **지원내용** :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도입(의무구매비율 8%)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
- □ 신청·접수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cert.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후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 제출서류 : 창업기업 해당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총사업자내역, 중소기업확인서
  - (조건별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금융기관 미지급 증명, 파산선고결정문, 파산면책선고문, 주주등 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정관,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등

### □ 처리절차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 확인서 발급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 확인 심사 ● (10일 이내)

# □ 문의사항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 1811-3773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http://cert.k-startup.go.kr

# 10. 로컬크리에이터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중복신청이 가 능한가요?

□ 당해년도 중복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둘 다 선정 시 한 개를 포기하 셔야 합니다.

2021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수행을 완료하고, 2022년도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 수행 신청가능 여부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공고문(3월 예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

# R&D

# 1. 창업기업 업력 판단기준 및 매출액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정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매출액의 기준은 직전년도(2021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 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2020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3월 이후 사업 신청시 2021년 재무제표 사용)
  - o 매출액 규모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세부사 업별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매출액	<ul> <li></li></ul>		
	의무사항 아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b>(사업자등록증 불인정)</b>		
설립년월일	* 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창업)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 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 력 산정		
	***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뒷장 참고]		

# 참고

# 창업여부 확인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0	ᅧ부
		갑장소에서의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	<u></u> 변경
ام ام الحد	갑 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1합 정조에지	갑장소에서의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	변경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청	항업
사버이이	갑 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uto	1 8포에지	갑장소에서의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	변경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	현환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글 경조에지	갑장소에서의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성	⋚계
4 HI OLOI	을 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UDO	글 정소에지	갑장소에서의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다시	A명의로 ·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0	니전 기전
A가	ᄔᄱᄼᄺᄋ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다시	A명의로 ·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혹	탁장
		기본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	누가

-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 업장에 해당)
  -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 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 2. 창업성장R&D 디딤돌 창업과제 內 첫걸음 과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의미합니다.

### 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과제는 몇 개 까지 할 수 있나요?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업별 최대 2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성장R&D와 기술혁신R&D 이 2개 사업은 졸업제 대상으로, 졸업제에 해당하는 과제는 1개만 수행 가능하며, 협력형 R&D는 추가로 1개 과제를 더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o 이 밖에도 수행중인 과제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거나, 소부장 강소기업 100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동시수행에서 적용되지 않으니 접수마감시 자격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 R&D 졸업제('20년 부터): 최대 4회(창업성장, 기술혁신, 글로벌창업)까지 지원 가능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졸업제 미적용

# 4. 지원 제외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직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5.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구매연계형과 공동투자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구매연계형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구매의무가 있고,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의 투자의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매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수요처가 해외에 있는 기업인 경우 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 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신청후 발급까지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6.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에 적합한 품목과 의료기관 수요 발굴 R&D 지원은?

- □ 방역물품중 중소기업에게 경쟁력이 있고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개발을 지원합니다.
- o 현장 의료진, 봉사자들이 착용하거나 사용한 방역물품 중 사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7.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은 과제 개발종료 후 개발완료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를 해야하나요?

□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 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술개발 완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 정비율을 납부하며, 세부사업별로 비율이 상이하니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라 2년간 납부 유예)

### 8.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탈락과제의 경우 재신청은 가능한가요?

□ 과제신청은 내역사업별로 모집차수가 다수인 경우에도 1회차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해에 공고가 여러번인 경우탈락과제(후보과제)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이가능합니다.

- 9.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중복성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 □ 국가 R&D 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정보마당 〉 지원과제에서 기술분야별
- o 또는 키워드별 검색에서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지원된 과제 검색이 가능합니다.
-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복성 검토에서 '중단'이나 '실패'로 나온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 기술보호 〉

- 10. 기술보호 보안자문과 벌률자문이 둘다 상담이 필요한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 스마트공장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습니다.
- 11. 기술보호 자문신청시, 전문가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신청시 전문가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신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하 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 12.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 □ 기술임치제도는 '콜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영업비밀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3. 기술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한면, 기술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 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14.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기술분쟁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15.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 〈 스마트공장 〉

### 16.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지원 대상은?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생산현장에 적합한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기간
구	분	기초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최대 5천만원)	최대 6개월
		고도화	최대 2억원(LV1~3) ~ 4억원(LV4이상)	최대 1년

# 지원 제외

---- < 부적격 사항 >

- 1.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2.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3.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4.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5.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6.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 \*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상담센터 : 1644-1736

스마트제족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042-388-0855, 0853, 0861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w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22년 지원시책」참조

### 17. '21년 대비 '22년 주요 개선내용이 무엇인가요?

- □ 모집방식이 상반기(1월), 하반기(6월) 각각 모집·선정합니다. 지원 조건은 '21년도 기초단계 지원 구축중인 기업은 '22년 상반기 고도화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 선정단계에서 사업프로세스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간소화됩니다. 이를 위해 현장평가는 기술성 평가(도입기업 발표+공급기업 배석) 이후 간략화된 현장확인으로 대신합니다. 또한 기초사업도 희망 기업에 한하여 코디네이터 매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18.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한가요?

□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제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수요기업이나 공급기업이 제외대상에 해당 여부는 사전확인 바랍니다.

# 19. 정부지원 받은 기업도 올해 신청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중이시면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지원받는 내용과유사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내용 중복으로 사전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불가하니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20.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이란?

- □ 로봇도입이 필요한 제조기업에 로봇엔지니어링 컨설팅, 로봇도입 지원, 로봇 활용 교육 등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대상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으로,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 업, 도박게임기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은 제외됩니다.

#### 우선 지원 제조 분야

- ① 세계적으로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제조 분야
- ② 기업체 수는 많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로봇활요이 시급한 제조 분야
- ③ 로봇적용으로 생산성·매출(수출) 증대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분야
- ④ 첨단제조로봇(협동로봇-무인이송로봇 등)을 활용하는 제조 분야

# 지원 제외

--- < 부적격 사항 > -

- 1.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2.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3.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4.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5.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6.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 053-210-9532(www.kiria.org)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w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21. 정부지원금은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30~100%으로 구성됩니다. 스마트공장 사업 중에서 가장 지원규모가 큰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의 경우 정부지원금 비중은 50%이내입니다.
- □ 정부지원금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상담센터 : 157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스마트공장1번가 : http://1st.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ㆍ접수)

기업마당(w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2022년 지원시책」참조

# П

# 수출·판로

# 1. 수출바우처 사업의 내수기업으로 2회 참가 완료. 추가 참여 가능 여부

- □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실적 성장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별 로 2회 참여 가능합니다.
- 내수기업으로 2회 참여완료 기업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발생한 경우 수출실적에 따라 10만불 이하는 초보기업,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은 유망기업, 1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은 성장기업, 500만불 이상은 강소기업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 2. 수출바우처 사업 기업분담금 비율 및 분할 납부 가능 여부

- □ 참여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기업분담금 비율이 정해집니다.
- 10억원 미만 30%, 10억원 ~ 50억원 미만 40%, 50억원 이상 50%
- □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에게 기업분담금 분할 납부 신청하여 협약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바우처 발급은 기업분담금 분할 납부 금액 비율에 맞추어 분할 발급.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처음 1회분은 협약시작일 기준 1개월 내에 기업분담금 총액의 30%이상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 습니다.

### 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비율

-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최대 70%, 매출액 30억 이상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 (신설)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하여 정부지원금을 10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횟수가 최근 5년간 (사업참여 연도 기준) 2회 이상인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

# 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증 외 기타 인증 지원가능 여부

- □ 2022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인증은 481개 인증, 이외의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경영평가\*·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경영평가 :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 5.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자격, 간접수출실적 인정 여부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장사업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각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을 대상, 수출실적은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접수출도 인정됩니다. 단, 신청 직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내수기업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6. 『브랜드K』지원제도란?

# □ 목적

○ 독자 브랜드 파워가 약해 저평가되고 있는 **우수 중기제품**을 발굴,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로 육성**하여 글로벌 진출지원

### 브랜드K란?

- ◇ 대한민국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
- ◇ **대한민국**에서 생산(Made in Korea)된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명품군"
- ◇ 대한민국의 "K"와 명품 마케팅을 위한 전략 "Brand"를 상징



#### □ 서류접수 및 문의

- (사업공고) '22년 1.17~ 3.31
- (서류접수) 아임스타즈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 (문 의) 중소기업유통센터 브랜드K지원팀
  - 02) 6678-9312, 9314

# □ 자격요건

-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Made in Korea)을 **자사가** 보유한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생산하는 기업
- ①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 단.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명기 확인 필요

# ②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Made in Korea)을 생산하는 기업

※ Made in Korea 요건 : 제품 제조비용의 60% 이상(R&D. 고용 등) 충족

분 야	세부 요건
	○ 제조비용의 60%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발생
	* 제조비용에는 생산·제조뿐만 아니라 R&D 및 개발내용도 포함
공산품	○ 물리적 가공공정이 대한민국에서 최소 한 단계 이상 이루어져야 함
	*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원자재나 중간재는 제조
	비용 계산에서 제외 가능
시ㄹㅍ	○ 사용된 원료의 무게기준으로 60% 이상이 대한민국 원산지여야 함
식료품	○ 제품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공정이 대한민국 內에서 이뤄져야 함

\* (Made in Korea 증빙자료) 공장등록증 또는 임가공·OEM계약서 사본 등 국내생산 제품임을 증명 가능한 자료 일체(생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병행 예정)

### ③ 지원제품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 위탁생산 제품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보유 여부는 **지적재산권 등의 증빙 가능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
- ※ 위탁생산 제품의 자격요건 판단 기준
- (¬) ODM 생산제품 → 지원 불가
- (L) 임가공·OEM 생산제품
- → ① 지원기업에서 제품에 대해 등록한 지적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증빙자료 보유 및 제출 필수(지적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
- → ② 임가공·OEM 생산 제품 中 '신청제품에 대한 핵심기술 미보유 제품은 탈락 처리
- → ③ 생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시, 자사 기술력 제품 여부 확인

< 제품 카테고리(총 7개 제품군) >

	< 제품 기대포니(중 /개 제품正) >				
구 분		구 분	제품군 세부내역		
1 생활		생 활	가전제품, 생활용품, 욕실용품, 수납용품, 청소도구, 세탁소품 등		
Ī	2	주 방	식생활 관련 가전제품, 조리도구, 주방잡화, 주방소모품, 보관용기 등		
3 뷰 티 화장품(메이크업, 스킨케어 등), 향수, 바디용품, 허 미용기기 등		화장품(메이크업, 스킨케어 등), 향수, 바디용품, 헤어, 뷰티소품, 이 미용기기 등			
Ī	4	식 품	과자류, 면류, 음료류, 즉석조리식품, 통조림, 견과류 등		
	5	가구·조명	책상, 침대, 의자, 탁자, 진열장, 수납장, 스탠드기기, 형광등, 사인조명 등		
	6	전자기기	영상가전, 음향가전,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주변기기, 디지털제품, 스마트기기 등		
Ī	7	기 타	찜질기기, 안마기, 체온계, 완구류, 육아용품, 레저·취미·스포츠용품 등		

\* 기재되지 않은 제품 외에도 일반 소비재(B2C) 제품인 경우 신청 가능

# ○ (지원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실질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 관리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선정기업이 해당 기업 또는 인증 제품과 관련된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기타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브랜드K'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Ⅳ 정책자금·기술보증

# 〈 정책자금 〉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절차는?

- □ 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은 온라인 상담예약 → 상담(대면/비대면) → 융자신청서 제출 → 기업심사 → 융자결정 → 대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 먼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을 예약한 후
- 예약된 상담일자에 **내방 또는 유·무선으로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상담 이후 정책자금 신청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온라인으로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업심사를 통해 융자 여부 결정 및 대출

# 관련 참고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절차

- ①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 희망기업은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신청대상 여부 등을 자가진단
- ② (상담) 온라인 상담예약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지역본(지)부와 융자신청 가능성 등을 상담
- ③ (정책우선도 평가) 중진공은 상담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 도 평가'(운전자금)를 통해 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④ (온라인 융자신청)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⑤ (기업심사)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정책자금 신청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를 수행
- ⑥ (융자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 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⑦ (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 2. 비대면으로도 정책자금 상담이 가능한지?

- □ 정책자금 상담은 내방을 통한 **대면상담** 및 유·무선을 통한 **비대면 상담**을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 두기 등으로 최근 정책 자금 상담은 유·무선을 통한 비대면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한 **시설자금** 필요기업, 정책자금 **최초 이용** 기업 등 대면상담 희망 기업은 기존대로 내방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 3. 정책자금 상담 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 □ 원활한 정책자금 **상담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표준재무제표**(3개년)가 필요합니다.
- 또한,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여부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 용보험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전년도)'를 확인하고 있으며,
- 그 외 신청자금의 종류 등에 따라 추가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상담 시 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서류 제출은 대면상담 신청기업은 내방 시 제출하고, 비대면상담 신청 기업은 중진공 담당자에게 FAX 또는 이메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 4. 은행을 통한 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이 불가한지?

- □ '20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에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는 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 \*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은 예외(보증서 담보 가능)
  - 자금의 용도(운전자금·시설자금), 융자 방식(중진공 직접대출,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보증 유형(전액보증·부분보증·해지조건부 보증 등)에 관계없이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모두 제한

### 5. 중소기업의 주 업종 판단 기준은?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된 업종은 한국표준산 업분류표(통계청 고시)의 업종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매출액 비중이 가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 관련 참고

# □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일반적으로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의 금액 평균으로 산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6. 코로나19 피해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무엇인지?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2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 2,000억원

# 관련 참고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개요

ㅇ 신청요건

신청대상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은 기타주점업(KSIC 56219), 입시목적 교육서비스업(KSIC 855~856)을 포함하여 지원가능
경영애로 판단기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 매출감소 비교 시점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2년 1분기 2.15%)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 〈 기술보증 〉

### 7. 보증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보증 또는 기타 기술평가 관련 상담은 고객님의 소재지 근처 영업점에서 담당
- 사업장 소재지 인근 영업점에 ① 유선 상담, ② 방문상담 가능
- 기보 디지털지점(cyber.kibo.or.kr)에서 회원 가입후 온라인으로도 보증신청 가능
- 디지털지점 보증 신청건을 영업점 담당자가 확인후 상담 진행

# 8. 보증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 방법은?

-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기술사업계획서 외에 사업자 정보, 부동산 정보, 금융 정보, 세무회계 정보 등 확인을 위한 서류 필요
- 기업이 모든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망을 통해 기보 직원이 직접 수집
- 기업은 기술사업계획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자체 보관 서류만 제출 필요
- 다만, 기업의 특이사항, 상품의 특성별로 추가적인 서류 제출 필요

# 관련 참고

구 분	서류 목록	비 고
사업계획서	기술사업계획서	고객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직원 직접 수집
사업자정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작권 작업 구입 
	주주명부	고객 제출
부동산정보	임대차계약서	고격 제글
T626±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금융정보	금융거래확인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직원 직접 수집
세무회계정보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기술정보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 9. 보증을 받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가요? 특허가 있어야 하나요?

- □ 보증은 기술평가 결과와 사업전망, 경영상태, 신용상태 및 보증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
- □ 기술평가 결과가 좋아야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첨단기술 분야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보는 국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중
- ㅇ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보증의 필수 요건은 아님.

### 10. 보증을 받을 때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 □ 평가료와 보증료로 구분
- 보증지원을 위한 기술평가료는 정액평가료 20만원으로 운영
- \* 보증금액 5천만원 이하 면제, 협약 등에 따라 별도 운영하는 경우는 협약에 따름
- 보증료는 보증이용기간 동안 납부하며,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 하여 산출
- 보증료율은 기술사업평가등급별 보증료율에 기업, 보증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가산, 감면하여 결정
-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보증료율(0.8%~2.2%) 보증료율 감면 + 보증료율 가산

최저 보증료율	평균 보증료율("20년)	최고 보증료율
연 0.5%	약 1.2%	연 3.0%

# 관련 참고

#### --- < 감면/가산 대상 > ·

#### ① 주요 보증료율 감면대상

감면대상	감면률
-벤처·이노비즈기업	-0.2%p
-장애인기업	-0.3%p
-국가유공자기업	-0.3%p
-지방기술유망기업	-0.3%p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0.1%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보증	-0.2%p

### ② 주요 보증료율 가산대상

가산사유	가산요율
-고액보증기업(보증금액 15억원 초과 기업)	+0.1%p ~ +0.2%p
-장기이용기업(보증이용기간 5년 초과)	+0.1%p ~ +0.3%p

### 11.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받을 때 금리는 어느정도 인가요?

- □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실 경우 대출 금리는 해당 금융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
- 다만, 기보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 상품별로 은행과 협약보증 운용을 통해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2. 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꼭 서야 하나요?

- □ 2018년 4월 이후 부터 법인기업이 신규보증을 받을 때 연대보증은 운용하고 있지 않음.
- ㅇ 대표자의 연대보증 없이 보증지원

# V

# 소상공인

# 〈 정책자금 〉

#### 1.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sup>\*</sup>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예)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 관련 참고

### □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19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20년)에 창업한 경우
- 1) 창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산정일=새희망자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2)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1)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이상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2) 창업 등을 한 지 12개월 미만 :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참고

#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근로자수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	10인 미만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억원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이하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5인 미만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 ,,,
19. 광업	В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4001 1111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인 미만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Н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33. 정보통신업	J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5인 미만
35. 부동산업	L	30억원	) 2년 미년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М	30억권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ગુળ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10 어 이	
41. 교육 서비스업	Р	10억원 이하	5인 미만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ગળ	) 5번 비판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1

# 2.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방문해야 하나요?

코로나 19확산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단 정책자금 일체에 대히
비대면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대출 상담예약 및 신청, 대리
대출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3. 자금 접수기간은 언제인가요?

자금마다	접수기간이	상이합니다.	접수기간에	대한 구최	세적인 /	사항은
소상공인계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	vw.semas.or.l	kr)를 통해	확인하	1실 수
있습니다.						

# 4.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저앤	ㄸ느	익부	<b>조기</b>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박생하지	않슾니다
ш	72 7	ᅩᆫ	근기	ユノーゥセ	′ '	0 4 0 7 1 1 4 6	큰 하이기	ᅜᆸ기기.

# 5.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소상공인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에서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6. 작년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자금신청 한도내에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1년도 3천만원 대출받았다면, '22년도	4천만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7. 사업장이 여러개인데,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각각의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하나,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 공동명의 사업장인데, 사업주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1개의 사업체로 인정하여 7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9. 최대신청한도는 얼마인가요?

-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대출) 청년고용특별자금, 성장촉진자금, 장애인기업자금과
  - (직접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소공인전용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10. 폐업하면 한번에 상환해야 하나요?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이 기본원칙이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 〈 지원사업 〉

# 11. 소상공인 무료법률을 받고 싶습니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5% 이하 인데요, 중위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 생계비를 대체한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상이합니다.
  - \* (예) 2인가구 : 3,86,000원, 4인가구 : 6,095,000원 <2021년기준>

### 12. 1인 자영업자인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과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만 신청하면 5년간 보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소진공 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사이트 go.sbiz.or.kr)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13. 하나의 업체가 2개이상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백년가게 신청시 업종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업종 및 업력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업력 기준을 적용하며,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 (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4.	백년가게	신청시	가업승계	경우	증빙서류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업승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포괄적 으로 제출받고 있습니다.

# 1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자격 및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 유망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부담금은 없습니다. 단, 교육수료 후 사업화 지원을 받을 경우만 자기부담금 이 있습니다. (사업비의 50% 예정)

### 16. 제로페이 가맹시 가맹비는 없나요?

□ 제로페이는 가맹비용이 없습니다. 가맹 가입을 할 경우 QR키트, POS기 업데이트, 단말기 등의 인프라와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습니다.

### 17. 제로페이 가맹점주는 결제내역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 제로페이 가맹점용 앱을 설치하시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제로페이 결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결제취소 기능은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원도 앱을 통해 직원등록을 신청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승인하게 되면, 이후 결제내역 관리, 결제취소, QR코드 관리가 가능합니다.